

[별표 3] <개정 2011.3.2>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33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나)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저장설비와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24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7 m
20톤 초과 30톤 이하	30 m
30톤 초과 40톤 이하	33 m
40톤 초과 200톤 이하	36 m
200톤 초과	39 m

비 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kg)

d: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kg/L)

V: 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 m 이상을 유지할 것

마)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 m 이상을 유지할 것

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 제9호('08.4. 17) 부칙 제5조 제5항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5호, '08. 2. 18) 충전의 안전성평가기준인 다음 ①부터 ③까지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④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충전시설 변경전후의 안전도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을 것. 이 경우 안전성평가의 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신청자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용량 증가 또는 수량 증가로 사업소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

③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충전시설을 변경할 것.

④ 저장설비와 충전설비(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서 정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저장설비가 지상에 설치된 저장능력이 30톤을 초과하는 용기충전시설의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저 장 능 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 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 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 m
40톤 초과	30 m

사)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 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기초기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미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받침대(받침대가 없는 저장탱크에는 그 아랫부분)는 같은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 그 받침대 및 그 부속설비는 화재로부터 그 저장탱크, 그 받침대 및 그 부속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열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다)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와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라) 시·도지사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의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처리능력은 연간 1만톤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일 것. 다만, 소형용기와 가스난방기용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능력 이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마)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1(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분의 1) 이상일 것

사)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아)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를 보호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000kg 미만인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자)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및 설치방법 등은 그 소형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차) 저장탱크에는 과충전 경보 또는 방지장치, 폭발방지장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부압과피방지 조치 및 방호조치 등 그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① 물분무장치(살수장치를 포함한다)나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② 저온저장탱크(2중각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된 저장탱크

③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4) 가스설비기준

- 가) 가스설비의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 나)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다)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충전기·잔량측정기·자동계량기로 구성된 충전설비와 로딩암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 가) 배관(관 이음매와 밸브를 포함한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 나) 배관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 다)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 라) 배관은 신축 등으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마) 배관은 수송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 바)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색과 표시를 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 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에는 그 설비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한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 나) 충전기 주위, 저장설비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 다)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부착된 배관에는 긴급 시 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액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옮겨 넣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대신할 수 있다.

- 라) 위험장소 안에 있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일 것
- 마)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의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 바)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배관이 설치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 사)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 아) 용기보관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 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나) 지상에 설치된 저장탱크와 가스충전장소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 다) 저장탱크(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이입·충전장소에는 소화를 위하여 살수장치·물분무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화능력을 가지는 설비를 설치할 것
- 라) 배관에는 그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부대설비기준

- 가) 충전시설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설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조치를 마련할 것
- 나)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설치실과 충전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충전장소와 저장설비(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는 불연성 재료나 난연성 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며, 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이 유리는 망입유리나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다) 충전된 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의 전체에 대하여 누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조식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용기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잔가스제거

장치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 다만 용기재검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기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소형용기 중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온도에서 가스누출시험을 할 수 있는 온수시험탱크를 갖추는 것

마) 소형용기 중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시설에는 캔밸브 교체를 위하여 캔밸브 교체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캔밸브를 교체하는 경우 그 용기 안의 잔가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잔가스는 다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충전능력에 맞는 수량의 용기전용 운반자동차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사)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것

(1)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만, 벌크로리를 확보한 자는 가스수급의 안정 및 운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허가받은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할 수 있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벌크로리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해당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cm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 별표 22제4호가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가스를 공급할 것

(라)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 22제4호가목1)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고용할 것(고용인원에 관하여는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인원을 준용하되, 이 경우 “저장능력”은 “별크로리 저장능력의 총합”으로 본다)

- (2) 별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 (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별크로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별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5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별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

V: 별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9) 표시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0) 그 밖의 기준

- 가)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나) 시·도지사가 1)가 및 사)에 대하여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 다)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사용할 수 있고, 임시저장시설은 안전하게 설치할 것. 이 경우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6조에 따른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라) 임시저장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사용에 관한 세부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 가) 저장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정한 방법으로 침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침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나) 저장탱크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것
- 다) 저장설비실 안으로 등화를 휴대하고 출입할 때에는 방폭형 등화를 휴대할 것
- 라)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 마)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 m 이내의 곳에서는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 바) 소형저장탱크의 주위 5 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아니할 것
- 사)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 아) 소형저장탱크의 세이프티커플링의 주밸브는 액봉(液封)방지를 위하여 항상 열어둘 것. 다만, 그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 자)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 차) 용기보관장소에 충전용기를 보관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게 할 것
 - ①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아니할 것
 - ② 용기보관장소의 주위 8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 ③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 ④ 충전용기(내용적이 5L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이나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 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 ⑥ 용기보관장소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을 것
- 카) 가스설비의 부근에는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 타)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파)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연결하려면 그 이음쇠와 연결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로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로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표시할 것
-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스의 종류와 방향을 표시할 것
-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 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거)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하려면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고,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너)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제조 및 충전기준

가)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가스의 용량이 상용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라) 액화석유가스는 공기 중의 혼합비율의 용량이 1천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공업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섞어 용기에 충전할 것

마)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 ①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 ③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바) 충전설비에서 가스충전작업을 하려면 그 외부로부터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사)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충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kg)

V: 용기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아) 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판을 가열할 필요가 있으면 열습포나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자) 소형용기 중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에어졸충전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충전하는 가스의 압력은 35℃에서 0.5MPa 미만이어야 한다.

차)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한 후 과충전된 것은 가스회수장치로 보내 초과량을 회수하고 부족량은 재충전할 것

카)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은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은 다음 기준에 맞게 할 것

- ①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대하여 다음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대하여 충전할 것

(1) 외관검사

(가) 제조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용접용기일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의 상태가 4급에 해당하는 찌힌흙(굽힌흙), 부식, 우그러짐 및 화염(전기불꽃)에 의한 흙이 없을 것

(2) 캔밸브

(가) 캔벨브는 부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부착연월이 각인되어 있을 것

(나)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 주름, 부식 등이 없을 것

(3) 표시사항

충전사업자는 용접용기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이 훼손된 것은 다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충전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접용기에 부탄가스를 충전할 때마다 해당 용접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충전하여야 한다.

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 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 송출 또는 이입하려면 “가스충전 중”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그 자동차에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 ② 저장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의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를 넘지 아니하도록 충전할 것
- ③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

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 ① 수요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를 받은 자인지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인지와 소형저장탱크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할 것
- ②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려면 그 소형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할 것
- ③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의 입회 하에 할 것
- ④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펌프 등의 작동을 주의·감시하여 과충전방지 등 작업 중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⑤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세이프티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3) 점검기준

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작동상황을 주기적(충전설비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충전용기(소형용기는 제외한다) 중 외관상 불량한 용기에 대하여는 가목8)다)

에 따른 시설로 누출시험을 실시하고 그 밖의 용기에 대하여는 비눗물을 이용하여 누출시험을 실시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는 연속공정에 의하여 $55\pm 2^{\circ}\text{C}$ 의 온수조에 60초 이상 통과시키는 누출검사를 전수에 대하여 실시하고, 불합격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는 파기할 것

라)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가목6)가)에 따라 설치 시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마)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시이트의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를 실시하여 누출량이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양 이하이고,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바) 정전기 제거설비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① 지상에서 접지저항치

②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상태

③ 지상에서의 절선 그 밖에 손상부분의 유무

사) 물분무장치,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아) 슬립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자)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차)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

충전시설 중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그 밖의 기준

가)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고, 임시저장시설은 사업소의 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재검사나 교체공사가 끝나는 즉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철거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충전하는 충전사업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①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의 운반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고압가스운반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를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로 본다.

② 충전사업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는 대리점 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대리점이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를 공급하려면 식품접객업소등과 가스사고책임한계, 관리사항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급하여야 하며, 충전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 가목8)사)(1)에 따라 운송을 위탁하는 자와 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운송을 위탁하는 자: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와 법 제23조에 따른 판매방법을 준수할 것[(2)(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송을 위탁받은 자

(가)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 가스공급하는 경우 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것

(나)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을 것

다. 검사기준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 사 항 목
가) 안전성확인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에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

	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가)부터 다)까지 · 1)마)부터 자)까지 · 1)파) · 1)거) · 2)가) · 2)나) · 2)라)부터 타)까지 · 2)하) · 3)가)부터 다)까지 · 3)마)부터 아)까지 · 3)차) · 4) · 5)는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 · 관리상태 중 필요한 사항 ① 안전밸브 ② 긴급차단장치 ③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④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⑤ 강제통풍시설 ⑥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⑦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⑧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⑨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 · 완성검사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가)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 · 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나)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부식 상태, 보온 · 보냉 상태 확인
다) 전기 · 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 · 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법 제27조의2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자동차용기 충전

가. 시설기준

1)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안전거리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 제9호(2008. 4. 17) 부칙 제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25호, 2008. 2. 18) 충전의 안전성평가기준인 다음 가) 및 나)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능력변경은 사업소 안의 합산 저장능력이 30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사항은 제1호가목1)바)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것

다)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저 장 능 력	제1종보호시설	제2종보호시설
10톤 이하	17m	12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14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16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18m
40톤 초과	30m	20m

2) 충전시설에는 그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충전작업을 위하여 로딩암·충전기·충전호스·차양 등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충전 시 자동차의 오발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발진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설치실·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호 유리는 망입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의 벽, 기둥 등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5)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가) 충전을 하기 위한 작업장
 - 나) 충전소의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 다) 충전소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
 - 마) 충전소 종사자의 숙소
 - 바)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 사)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창고
 - 아)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세차시설
 - 자)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 차)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한다)를 위한 작업장
 - 카)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한다) 및 전시장(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시하는 공간을 말한다)
- 6) 5)바)부터 카)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주차위치의 중심을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7) 5)나)·다)·바)·사)·차) 및 카)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 8) 자동차 제조사나 연구소에 설치되는 자동차용기 충전소에는 5)부터 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9) 그 밖에 자동차용기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바)·3)마)·3)바)·4)다)·6)아)·8)나)부터 사)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른 것

나. 기술기준

- 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가스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할 것
- 2) 충전장의 충전기앞(옆) 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방향을 표시할 것
- 3) 그 밖에 자동차용기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차)·2)자)·2)차)·2)타)·2)파)·2)하)·3)나)·3)다)·5)나)·5)다)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른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사) 및 아)의 “용기”는 “자동차연료용 용기”로 보고, 제1호나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2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 사 항 목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② 제2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1)가)부터 다)까지·1)마)부터 차)까지·1)파)·1)거)·2)가)·2)나)·2)라)부터 하)까지·3)가)부터 다)까지·3)마)부터 아)까지·3)차)·4)·5)와 제2호나목1)은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상태 중 필요한 사항 ① 안전밸브 ② 긴급차단장치 ③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④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⑤ 강제통풍시설 ⑥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⑦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⑧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⑨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가)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나)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다)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나) 안전성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법 제27조의2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가. 시설기준

- 1)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은 4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에는 자동차용기 충전시설, 소형용기 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2) 마운드형 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제1호가목1)가) 및 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저장설비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 3)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그 마운드형 저장탱크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마운드형 저장탱크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 4) 마운드형 저장탱크는 제1호가목3)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호가목 3)차)와 관련하여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5) 충전시설에는 충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설비설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고 가스설비설치실·사무실 등 건축물의 창의 유리는 망입 유리 또는 안전유리로 하는 등 안전한 구조로 할 것
- 6) 사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된 사업장 밖의 배관기준을 적용한다.

7)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바)·3)마)부터 차)까지·4)다)·6)아)·8)나)부터 바)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발차할 것
- 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할 것
 - 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둘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천 L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등을 설치할 것
 - 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이입할 때에는 배관접속 부분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그 배관 안의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 3)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려면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수여부 및 운반책임자의 자격 또는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할 것
- 4) 그 밖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바)부터 차)까지·2)마)·2)아)·2)자)·2)타)·3)나)·3)다)·5)나)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나목2)라) 및 사)의 “용기”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보고, 제1호나목5)가)의 “제1호나목”은 “제3호나목”으로 본다.

다. 검사기준

- 1)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 사 항 목
가) 안전성확인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3)라)(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5)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으로 한정함), 5)마)(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6)바)(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과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으로 한정함), 7)나)(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으로 한정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만, 안전성확인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② 제3호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제1호나목1)가)부터 다)까지·1)마)부터 차)까지·1)파)·1)거)·1)너)·2)가)·2)나)·2)라)부터 하)까지·3)가)부터 다)까지·3)마)부터 아)까지·3)차)·4)·5)와 제3호나목1)·3)은 제외한다] 중 해당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 유지·관리상태 중 필요한 사항 ① 안전밸브 ② 긴급차단장치 ③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 ④ 물분무장치와 살수장치 ⑤ 강제통풍시설 ⑥ 정전기제거장치와 방폭전기기기 ⑦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⑧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 ⑨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성확인·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1)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 항목에 대하여 할 것

진단 분야	진단 항목
가) 일반 분야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출하 설비의 운영 실태
나) 장치 분야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부식 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다) 전기·계장 분야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 나) 안전성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별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 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법 제27조의2의 상세기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